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8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인 군인의 범위 조정 및 공원 유료주차 운영시간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군인 정의 관련 법령 변경(안 제3조)
- 나. 공원 유료주차 운영시간 조정 관련 근거 마련(안 별표2)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관련 조문 정비(안 제3조, 4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5】
 - 입법예고 : 2026. 1. 14. ~ 2026. 2. 3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7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단 체:”를 “단체:”로 한다.

5. 군인: 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말한다.

제41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환경녹지국
입 안 자	공원과장	김 호 식
	공원행정팀장	윤 혜 원
	담 당 자 (연락처)	임 수 연 (481-2413)

[별표 2]

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(제9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1회 주차요금(1구획당)		1일주차권	월간
	최소 60분까지	60분초과 후 30분마다		
소형	무료	300	2,000	20,000
대형	500	500	3,000	30,000

[비고]

1. 주차요금 부과는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도시공원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.
2. 유료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. 다만, 공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군인</u>: 「병역법」에 따라 <u>복무 중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(직업군인은 제외한다) 및 전환복무자(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)를 말한다.</u></p> <p>6. <u>단체</u>: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</p> <p>7.·8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군인</u>: 「<u>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5조에 따른 <u>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말한다.</u></p> <p>6. <u>단체</u>: ----- ----- -----.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	<p>제41조(수당 등)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.</p>

【별표 2】

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(제9조 관련)

<신 설>

구분	1회 주차요금(1구획당)		1일주차권	월간
	최소 60분까지	60분초과 후 30분마다		
소형	무료	300	2,000	20,000
대형	500	500	3,000	30,000

<신 설>

【별표 2】

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(제9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1회 주차요금(1구획당)		1일주차권	월간
	최소 60분까지	60분초과 후 30분마다		
소형	무료	300	2,000	20,000
대형	500	500	3,000	30,000

[비고]

1. 주차요금 부과는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도시공원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.
2. 유료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. 다만, 공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□ 부대의견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공원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취지는 장기주차, 방치차 등 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, 공원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이므로, 이를 고려해 장래 공원 주차장 유료화 시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은 월정기권 등의 장기 이용을 전제로 한 운영방식은 공원의 입지
여건, 이용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
하기 바람.